

투자위험등급 2등급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메리츠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을 변동성을 감안하여 2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메리츠코리아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리츠코리아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메리츠코리아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주식](펀드코드 : AT880)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메리츠자산운용(주)
3. 판매회사 :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meritzam.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작성 기준일 : **2022. 9. 26**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2. 11. 1**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모집(매출) 총액]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요약정보>	5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9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9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9
3. 모집예정금액 : 10조좌	9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9
5. 인수에 관한 사항	9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9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10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10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11
4. 집합투자업자	11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11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12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13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3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7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20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23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26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27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29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32
1. 재무정보	32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4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35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39
1. 집합투자업자의 관한 사항	39
2. 운용관련 업무 신탁업자 등에 관한 사항	41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41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44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44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47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7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0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51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1

참고 – 펀드용어정리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 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 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에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성과보수를 정한 펀드인 경우 총보수, 비용, 기재 외의 성과보수가 별도로 부과되어 투자자에게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실제 부과된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 증권(일괄)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간이 및 예비포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메리츠코리아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주식] (펀드코드: AT880)

투자위험등급 2 등급 [높은 위험]						메리츠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 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에 분산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며, 주식관련 자산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 에 따른 주식가격 하락위험, 시장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메리츠코리아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집합투자기구는 메리츠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신탁재산의 90% 이상을 투자하는 주식형 자 집합투자기구으로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제도가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IPR)를 개설한 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퇴직연금 투자신탁입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증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보수·비용 예시(단위: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형(C)	없음	1.285%	0.75%	-	1.2910%	132	270	412	712	1,565		
투자실적추이 (연평균수익률)	주 1)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보수·비용(판매수수료+총보수·비용) 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또한, 피투자펀드의 보수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주 2)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 2 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27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3)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이후					
				21.09.27 ~ 22.09.26	20.09.27 ~ 22.09.26	19.09.27 ~ 22.09.26	17.09.27 ~ 22.09.26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형(C)(%)	2014-08-21	-27.20	1.90	7.04	3.09	1.69						
	비교지수(%)	2014-08-21	-28.94	-1.28	2.30	-1.33	0.86						
	수익률 변동성(%)	2014-08-21	13.88	15.41	20.58	18.47	17.93						
운용전문인력	주 1) 비교지수 : KOSPI X 100%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 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 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준일 : 2022-10-19)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연평균 수익률(국내주식형)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김형석	1987	책임 (차장)	38 개	12,945억원	-25.27%	1.93%	-25.34%	1.78%	4년			
				성과보수가 있는 경우									

			3 개	214 억원				
김홍석 1969	부책임 (상무)	-	-					
		성과보수가 있는 경우						11 년 9 개월
		-	-					
박정임 1977	부책임 (수석)	38 개	11,764억원					
		성과보수가 있는 경우			-25.34%	1.81%		3 년 2 개월
		3 개	214억원					

주 1)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은 팀으로 운용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 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 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 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주식, 채권 등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국내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 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위험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최초로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사전 동의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 또는 해산할 수 있습니다.
환매제한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주1) 주요 투자위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매입 방법 | 15 시 30 분(오후 3 시 30 분)이전
: 제 2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15 시 30 분(오후 3 시 30 분)경과 후
: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15 시 30 분(오후 3 시 30 분)이전
: 제 2 영업일 기준가격 적용 제 4 영업일 지급
· 15 시 30 분(오후 3 시 30 분)경과 후
: 제 3 영업일 기준가격 적용 제 4 영업일 지급 |
|-------|--|--|

주2) 해당사항 없음

기준가격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	------	---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meritzam.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구 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세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수익자에 대한 과세	구분	주요내용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이거나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이하이거나 1억 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 및 연금저축계좌 납입한도가 차등 적용되오니, 관련 내용은 투자설명서, 소득세법 및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금수령시 연금수령 방법 등에 따라 과세
	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연금 수령, 연금외 수령 등 연금의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가 다름.	
집합투자업자	메리츠자산운용(주) (TEL. 02-6320-3000)		
모집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10 조좌 (단,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	
효력발생일	2022. 11. 1	준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meritzam.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조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39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 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판매 수수료	수수료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타	무권유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펀드 등(F)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meritzam.com) 및 판매회

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meritzam.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meritzam.com)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메리츠코리아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주식](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AT880)			
(종류)클래스	종류C	종류CF	종류CG	종류C-Pe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펀드 등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무권유저비용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B4703	B4704	BU476	BT369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마. 특수형태 : 모자형(다른 집합투자기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집합투자기구)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X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조좌

이 투자신탁은 10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운용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 모집기간 : 이 투자신탁은 추가 모집이 가능한 개방형(추가형)투자신탁으로 모집기간을 따로 정해 두지 않습니다.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판매사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2)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으로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meritzam.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1) 모집(판매)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메리츠코리아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주식](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AT880)			
(종류)클래스	종류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종류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펀드 등	종류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무권유저비용	종류C-Pe2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B4703	B4704	BU476	BT369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주요내용
2014. 8. 21	최초설정
2015. 6.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류형으로 변경 및 환매수수료 삭제) - 최근 회계연도 6개월이상 경과에 따른 반기실적 기재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및 FATCA 반영
2015. 10.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2항4호에 근거한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
2016. 7.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투자위험등급 분류체계 개편)
2016. 7.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증권시장의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판매 및 환매의 기준시점 변경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제2항제4호에 근거한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시행령 개정 사항반영 등
2016. 9.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2항4호에 근거한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
2017. 7.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규약 변경(종류CG, 종류C-Pe2 신설) - 소득세법개정사항 반영(연금계좌세액공제) - 최근 회계연도 6개월이상 경과에 따른 반기실적 기재 등
2017. 9.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2항4호에 근거한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 - 투자위험등급 분류기준 변경사항 반영 등
2018. 9.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2항4호에 근거한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 - 최근 펀드결산에 따른 변동성 변경 등
2019. 9.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2항4호에 근거한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 - 최근 펀드결산에 따른 펀드의 변동성 변경 및 투자위험 등급 변경(2등급->3등급) 등

2019. 9. 16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
2020. 9.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2항4호에 근거한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 - 최근 펀드결산에 따른 펀드의 변동성 변경 및 투자위험 등급 변경(3등급->2등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등
2020.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운용으로 변경 및 운용전문인력 변경 - 집합투자재산 평가방법 일부개정반영 등
2021. 9.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2항4호에 근거한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 - 최근 펀드결산에 따른 펀드의 변동성 변경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등
2022. 10.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2항4호에 근거한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 - 최근 펀드결산에 따른 펀드의 변동성 변경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등
<u>2022. 11. 1</u>	<u>-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추가에 따른 변경</u>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집합투자기구는 추가 자금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메리츠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04(계동, 계동빌딩) (대표전화 : 02-6320-3000)

주1)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기준일 : 2022-10-19)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주식형)				운용 경력년수	주요이력사항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김형석	1987	책임 (차장)	38 개	12,945억 원	-25.27%	1.93%	-25.34%	1.78%	4년	-메리츠자산운용 주식운용팀 매니저/애널리스트(현재) -한국투자증권 법인영업부							
			성과보수가 있는 경우														
			3 개	214 억 원													

김홍석	1969	부책임 (상무)	-	-	-	-	-	11년 9개월	-메리츠자산운용 자산운용본부장(CIO) (현재) -라자드코리아자산운용 주식운용 매니저 -스커더인베스트먼트 /도이치자산운용 주식운용 애널리스트				
			성과보수가 있는 경우										
박정임	1977	부책임 (수석)	38 개	11,764억원	-25.34%	1.81%	-	3년 2개월	-메리츠자산운용 주식운용팀 매니저(현재) -BNP PARIBAS HK, Asia Pacific 주식기관영업부 -UBS Securities(USA), Asia ex-Japan 주식기관영업부				
			성과보수가 있는 경우										
			3 개	214 억원									

주1)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은 팀으로 운용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 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나. 책임운용전문인력의 최근 변경 내역

운용기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부책임운용전문인력
2014.8.21 ~ 2020.12.30	김홍석	-	-
<u>2020.12.31 ~ 2022.10.31</u>	<u>2020.12.31 ~ 현재</u>	<u>2020.12.31 ~ 현재</u>	<u>-</u>
<u>2022.11.1 ~ 현재</u>	<u>김형석</u>	<u>박정임</u>	<u>2022.11.1 ~ 현재</u>
			<u>김홍석</u>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형), 투자신탁, 추가형, 개방형, 모자형, 종류형
나. 모자형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모집합투자기구

모집합투자기구	메리츠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 펀드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등 적극적으로 운용
투자전략	철저한 펀더멘탈 리서치를 통해 수립한 종목별 투자전략을 바탕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지속 가능한 사업구조와 우수한 경영진을 지닌 저평가된 기업을 발굴하고 장기 투자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비교지수*대비 초과성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주요 투자위험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주식투자위험, 파생상품투자위험

*비교지수 : KOSPI*100%

다.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 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 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타	무권유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펀드 등(F)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 이 집합투자기구는 모자형구조의 투자신탁으로서 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제도가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 계좌(IRP)를 개설한 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퇴직연금 투자신탁입니다.

※ 참조지수: KOSPI X 100%

그러나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자투자신탁의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한도	주요내용
①	모 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	90% 이상	메리츠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수익증권
②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10% 이하	<o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대출(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 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다만,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의 범위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음.
③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투자신탁재산의 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함을 의미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의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모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등)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주1) 자세한 투자대상은 집합투자규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메리츠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투자한도	주요내용
①	주식	60% 이상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 제15항 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이하 "주식"이라 한다)
②	채권	4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③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④	어음	40% 이하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채무증서 또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어음증권으로서 취득시 신용등급이 A3-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⑤	주식 및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집합 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주식 및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⑥	금리스왑거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집합투자증권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	
⑦	집합투자증권	40%이하 (단, ETF에의 투자는 30%까지 가능)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189조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법 제196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법 제 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⑧	환매조건부채권매도	증권총액의 50%이하	

⑨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증권총액의 50%이하
⑩	증권의 차입	①~③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⑪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고유재산과의 거래
⑫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1. 단기대출 :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2. 금융기관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

* 투자신탁재산의 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함을 의미한다.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③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③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④~⑩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3)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등급이 ② 및 ④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자투자신탁의 투자제한]

구분	내용	적용 제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	--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메리츠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주식]

구분	내용	적용 제외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p> <p>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p> <p>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p>	-
	<p>각 집합투자증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p>	-
동일종목 투자	<p>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제1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증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최초설정일 로부터 1개 월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시가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 ○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5까지 투자하는 행위로서 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의2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행위 	
파생상품매매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동일회사 기초 파생상 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증권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집합투자증권 에 투자	<p>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p> <p>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p> <p>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다.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라.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p> <p>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증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법 제84조제4항에서 정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주1)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규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이 집합투자기구는 메리츠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신탁재산의 90% 이상을 투자하는 주식형 자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이에 따라 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략은 아래 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방침과 동일합니다.

1)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모집합투자기구 : 메리츠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주식]

1) 개요

메리츠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주식]은 주식을 법 시행령 제 94 조 제 2 항 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형 투자신탁입니다.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하는 종목들을 이 투자신탁의 자산으로 편입할 예정입니다.

2) 모집합투자기구의 주요투자전략

- 철저한 펀더멘탈 리서치를 통해 수립한 종목별 투자전략을 바탕으로 운용할 계획

- ① 지속 가능한 사업구조와 우수한 경영진을 지닌 저평가된 기업을 발굴하고 장기 투자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비교지수*대비 초과성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② 포트폴리오 구성

- ✓ 장기적인(3년이상) 관점에서 우수한 경영진과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지닌 기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 ✓ 업종 내 시장점유율, 성장성, 업종 내 경쟁력, 브랜드를 고려하여 기업 선정
- ✓ 다른 기업의 진입이 불가능한 진입장벽(기술, 규모, 가격 등)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
- ✓ 기업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 확대할 능력을 갖춘 기업에 투자
- ✓ 미래에 일등기업이 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기업에 투자
- ✓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추세적으로 증가면서 높은ROE(Return on Equity)*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기업에 투자
- ✓ 주가가 성장성 및 경쟁력을 고려할 때 충분히 저평가 되어있는 기업에 투자
- ✓ 이해할 수 있고 좋은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원칙
- ✓ 소외된 저평가 기업에 대한 발굴 및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제고
- ✓ 건전한 지배구조와 우수한 경영진을 갖춘 기업에 투자

③ 투자운용 프로세스

- ✓ 커버리지 기업 및 산업에 대해 심도 깊은 리서치를 수행하며 회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경쟁적 우위, 그리고 향후 사업의 방향성 및 지속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현금흐름, 수익성 등을 평가하여 밸류에이션과 비교 분석 합니다.
- ✓ 운용프로세스의 주요사항은 계량적 스크리닝, 회계분석 및 펀더멘탈 분석입니다.
 - i. 계량적 스크리닝 : 높은 재무적 성과 (높은 ROE*, ROA*, ROIC*, 잉여현금흐름*)와 매력적인 가격수준 (낮은 price/book, price/cash flow, price/earnings, price/sales)*등의 종목을 선별
 - ii. 회계 분석 : 회사의 재무정보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및 기타 관련 주석)의 분석을 통해 회계적 결정 및 방침이 밸류에이션과 재무적 지표에 영향을 주는지를 판단
 - iii. 펀더멘탈 분석 : 투자운용 프로세스 중 중요한 요소인 펀더멘탈 분석이며, 이는 회사의 지속 가능한 수익창출 여부, 이슈 분석 및 가격의 재평가 가능성 있는지 여부를 확인. 이 단계에서는 회사의 아래 사항들이 포함하여 분석.
 - (ㄱ) 경영진의 자질과 능력
 - (ㄴ) 비즈니스 모델의 지속가능성 여부과 강점과 우수성 평가
 - (ㄷ) 경쟁적 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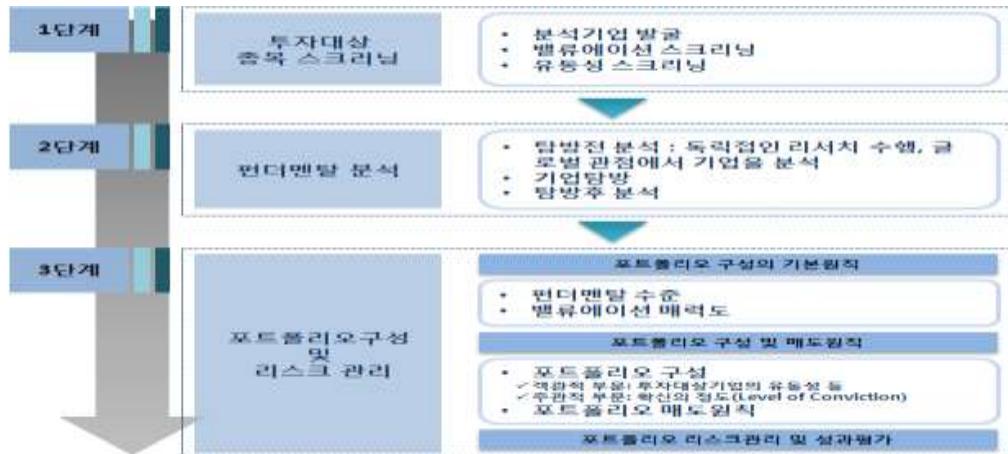
(ㄹ) 매출 및 수익성 추이

(ㅁ) 브랜드 경쟁력

(ㅂ) 거시적 환경

(ㅅ) 기업지배구조의 건전성

④ 포트폴리오 선정프로세스



※ 상기의 프로세스 및 운용전략은 실제 운용 또는 시장상황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Bottom up approach 방식(상향식 접근방식) : 기업분석→산업분석→거시경제순으로 분석하는 방식

* ROE (Return On Equity) 자기자본이익률

: 기업이 자기자본(주주지분)을 활용해 1년간 얼마나 벌어들였는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로 경영효율성을 표시

* ROA (Return On Assets) 총자산순이익률

: 기업의 총자산에서 당기순이익을 얼마나 올렸는지를 가늠하는 지표

* ROIC (Return On Invested Capital) 투하자본순이익률

: 기업이 실제 영업활동에 투입한 자산으로 영업이익을 얼마나 거뒀는지 나타내는 지표이며, 기업의 수익 창출 역량을 측정하는 데 활용

* 잉여현금흐름

: 기업이 사업활동에서 벌어들인 현금에서 각종 비용과 세금 등을 빼고 남은 잔여 현금흐름으로 기업에 현금이 얼마나 순유입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 price/book(price/book Value Ratio) : 주가를 1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값

기업의 주가가 순자산에 비해 1주당 몇배로 거래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

* price/cash flow Ratio : 주가를 1주당 현금흐름으로 나눈 값

주가가 주당 현금흐름의 몇 배에 해당하는가의 배수를 나타낸 투자지표

* price/earnings Ratio : 주가를 1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

기업이 시장에서 평가받는 가치대비 수익창출 능력을 종합한 대표 지표

* price/sales ratio : 주가를 1주당 매출액으로 나눈 값

기업의 성장성에 주안점을 두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주식을 발굴하는 이용되는 성장성 투자지표

비교지수 KOSPI *100%

※ 선정사유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비교지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자산내 주식편입비율을 감안하여 비교지수를 지정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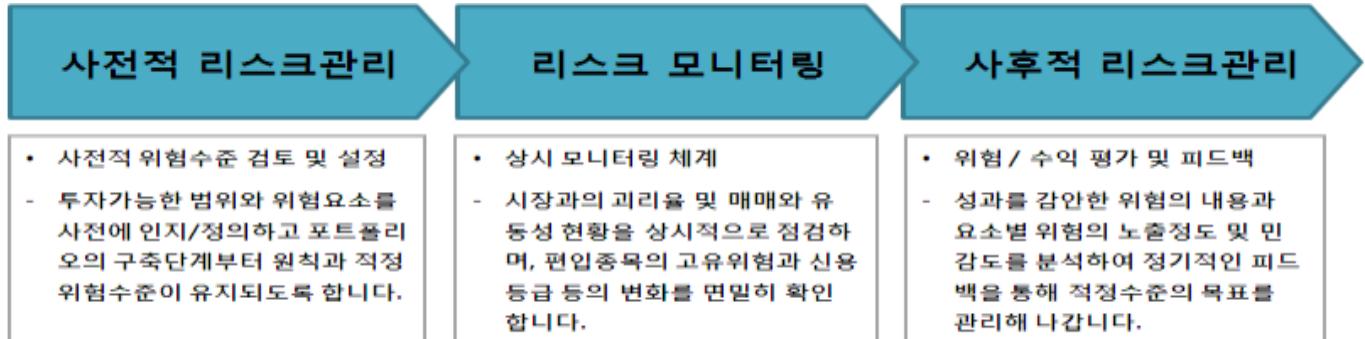
* 상기 비교지수는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이 투자전략은 일괄신고서 작성시점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제시된 것으로, 시장상황의 변동이나 당사의 내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최적의 대안이 존재할 경우 별도의 사전예고 없이 변경 시행될 수도 있으며, 이후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3) 위험관리

피드백(사전적리스크→리스크모니터링→사후적 리스크관리)을 통한 리스크에 대한 사전 통제력을 강화하여 철저한 리스크관리를 시행합니다.



나. 수익구조

당 집합투자기구는 모 집합투자기구(메리츠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자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따라서 투자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률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주식, 채권 등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국내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 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의 주식형 모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주로 투자하므로 주식의 가격하락 위험에 노출됩니다. 즉, 주식가격은 투자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차입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이 투자증권을 차입할 경우, 차입자산을 매도하여 해당 자산의 반환 시점에 예상과 달리 그 자산의 가치가 급등하게 되면, 매도시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함으로 인해 그 차액(매도가-매수가)만큼 투자원금액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증권대여위험	이 투자신탁의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이 투자신탁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대여할 경우, 증개회사 및 거래상대방의 시스템 및 운영오류나 거래상대방의 파산으로 인해 자산의 회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신탁의 투자자산 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투자자는 기회비용 부담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주식및채권관련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은 적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주식 및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의 특성으로 인한 레버리지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운용전략에 따라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해지 목적으로 파생상품에 투자할 경우 시장내의 수급과 시장 외부변수에 따라 파생상품의 가격 움직임이 기초자산의 움직임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상치 못한 손실로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및 운용에 대한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재산을 환매조건부 매도로 운용할 수 있으며, 환매조건부채권(RP)이란 단기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채권을 다시 매수할 것을 원칙으로 현재 채권을 매도하는 거래계약입니다. 따라서 이 상품은 단기간에 자금을 조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레버리지 위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에 의한 자금조달로 금융상품을 매입할 경우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대한 기간의 불일치, 금리 불일치 등 미래의 경제 상황에 따라 조달금리가 운용금리보다 높아져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및 RP매입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투자재산을 정기예금, RP매입 등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유동성 자산의 경우 시장매각이 제한되고, 중도해지 시 약정이율의 축소 적용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는 환매연기로 기회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거래상대방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 또는 계약상대방이 신용등급의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 단기금융상품, 당해계약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에 따라 채무 등의 지급유예, 채무증권 등이 주식과 같은 지분증권 또는 다른 종류의 새로운 채무증

	권(계약) 등으로의 전환, 변제기간이 장기간 유예 되는 등의 방식으로 당초의 권리가 변경되어 투자원본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다. 기타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경우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신탁재산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 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는 '11.매입,판매,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의 '나.판매'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투자위험 등급	(2)등급	높은 위험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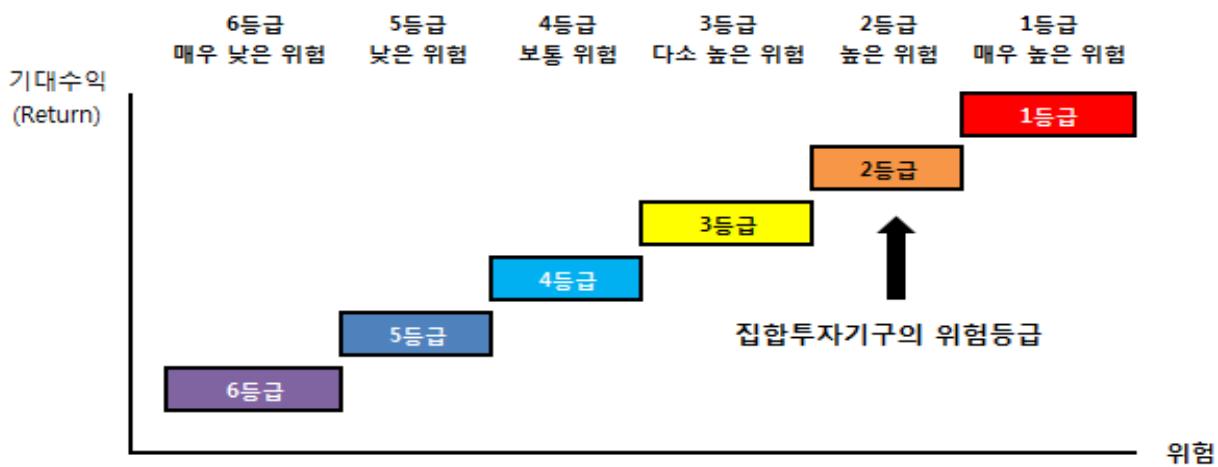
※ 최직근 결산일 기준 과거3년간 실제 주간 수익률의 변동성(연환산) : 20.58%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식형 모 집합투자기구에 90% 이상을 투자하는 주식형 자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고려하여 6개의 투자위험 등급 중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는 여유자금으로 투자하며, 투자자는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주식은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과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아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위험등급은 메리츠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으로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매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수익률 변동성' 이란?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투자기간 동안 투자신탁의 수익률을 평균수익률과 대비하여 변동한 범위를 측정하기 위한 수치로써,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펀드의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연환산 표준편차를 의미합니다. 실제 변동성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하며, 수익률 변동성 값이 클수록 투자신탁의 위험은 커집니다.



※ 투자위험등급분류 기준표(연환산 표준편차 기준)

등급	1(고위험)	2	3	4	5	6(저위험)
표준편차	25%초과	25%이하	15%이하	10%이하	5%이하	0.5%이하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로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분류하였음.

11. 매입, 판매, 전환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은 판매회사(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집합투자기구의 가입가능한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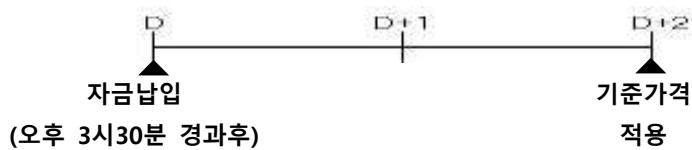
구분	지급비율(%)			
	종류C	종류CF	종류CG	종류C-Pe2
보수구조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펀드 등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펀드 등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무권유저비용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투자자의 자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제도가입자 및 IRP(개인형퇴직연금계좌) 개설한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제도가입자 및 IRP(개인형퇴직연금계좌) 개설한 투자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및 퇴직연금보험 전용 집합투자증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제도가입자 및 IRP(개인형퇴직연금계좌) 개설한 투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 창구 판매 수수료·보수보다 낮은 판매 수수료·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전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제도가입자 및 IRP(개인형퇴직연금계좌) 개설한 투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 창구 판매 수수료·보수보다 낮은 판매 수수료·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증권
선취판매수수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후취판매수수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3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 납입일의 다음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나)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 납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단, 최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을 적용)



(4)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

매입청구시 취소 또는 정정은 당일 15시30분 [오후 3시30분]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30분 [오후 3시30분]경과 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판매회사의 영업시간까지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매입청구시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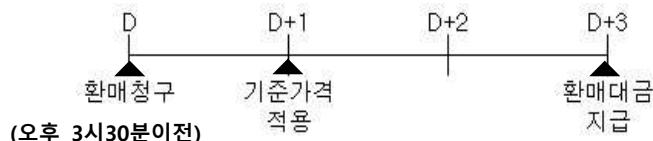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은 판매회사(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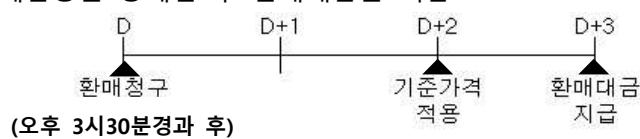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3시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나) **오후 3시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환매청구시 취소 또는 정정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당일 15시30분[오후 3시30분]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30분[오후 3시30분] 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판매회사의 영업시간까지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판매회사가 해산 ·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 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시점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6)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7)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5 시 30 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한 경우에는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②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환매를 청구 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회사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①또는③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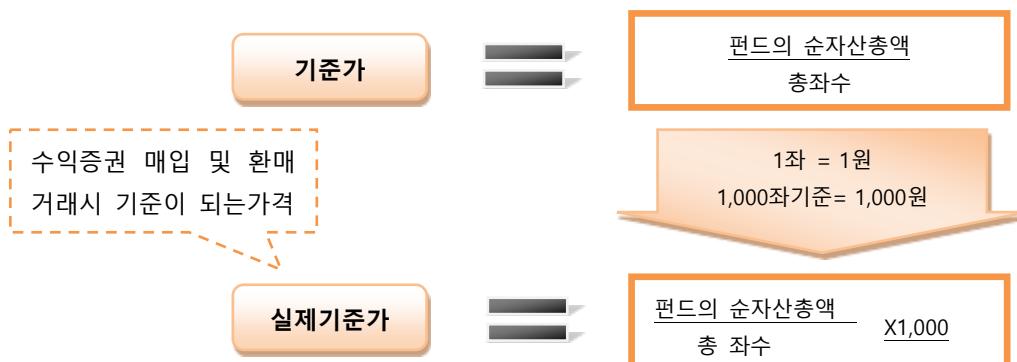
다. 전환 :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펀드 간 판매 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펀드 종류별 기준가격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meritzam.com) · 판매회사 ·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②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③장내파생상품	평가기준일에 당해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가격(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으로 평가
③-①장외파생상품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 또는 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④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은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⑤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④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⑥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⑦집합투자기구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 다만, 외국 증권시장에서 상장된 외화표시 집합투자증권(수익증권)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날에 공고(또는 제공)된 기준 가격으로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2)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기구의 판매회사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명칭 (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판매 수수료	후취판매 수수료	환매 수수료	전환 수수료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제도가입자 및 IRP(개인형퇴직연금계좌) 개설한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	-	-	-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펀드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제도가입자 및 IRP(개인형퇴직연금계좌) 개설한 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및 퇴직연금보험 전용 집합투자증권	-	-	-
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무권유저비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제도가입자 및 IRP(개인형퇴직연금계좌) 개설한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 창구 판매 수수료•보수 보다 낮은 판매 수수료 •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증권	-	-	-
C-Pe2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전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제도가입자	-	-	-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를 개설 한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지급비율(연간, 순자산총액의 %)				지급시기
	C	CF	CG	C-Pe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퇴직연금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퇴직연금, 펀드 등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퇴직연금, 무권유저비용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퇴직연금		
집합투자업자보수	0.5000	0.50	0.50	0.5000	
판매회사보수	0.7500	0.03	0.40	0.3750	
신탁회사보수	0.0200	0.02	0.02	0.02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150	0.015	0.015	0.0150	
총 보수	1.2850	0.565	0.935	0.9100	
기타비용	0.0040	-	-	0.0040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1.2890	0.5650	0.9350	0.9140	-
(동종유형 총 보수)	-	-	-	-	-
합성 총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1.2910	-	-	0.9160	-
증권 거래비용	0.0334	-	-	0.0333	사유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21.08.21 ~ 2022.08.20]

* 기타비용 : 감사보수, 펀드평가보수, 채권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해외거래예탁비용, 해외원천납부세액, 보관대리인보수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21.08.21 ~ 2022.08.20]

모자형투자신탁의 경우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증권거래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증권거래비용 : 국내주식매매수수료, 국내채권매매수수료, 장내파생매매수수료, 기타매매수수료, 콜중개수수료, SWAP매매수수료, 대차관련수수료, REPO수수료, 해외주식매매수수료, 해외채권매매수수료, 해외수익증권매매수수료, 해외파생매매수수료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천원)
증권거래비용	18,191

* 금융비용 :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이자비용 등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천원)
금융비용	-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5)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 (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6)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명칭 (종류)		투자기간	1년	2년	3년	5년	10년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32	269	411	711	1,56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32	270	412	712	1,565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펀드 등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58	118	181	316	709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58	118	181	316	709
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무권유저비용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6	196	299	519	1,15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96	196	299	519	1,153
C-Pe2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4	191	293	508	1,12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94	192	293	509	1,130

주1) 투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설정된 종류의 경우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타비용을 알 수 없어 기타비용을 포함하지 않고 작성하였습니다.

(3)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기타비용

-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 5)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회계기간 종료일의 익영업일에 분배하며,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자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수익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부터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한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text{환급세액} = \text{외국납부세액} \times \text{환급비율}^*$$

*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 1 이면 1, 환급비율 < 0 이면 0 으로 함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집합투자기구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집합투자기구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원천징수 원칙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면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2020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한 분부터 적용

- 종합소득이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59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 당해 연도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

에 납입한 금액+연금 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다만,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중 적은 금액을 추가 세액공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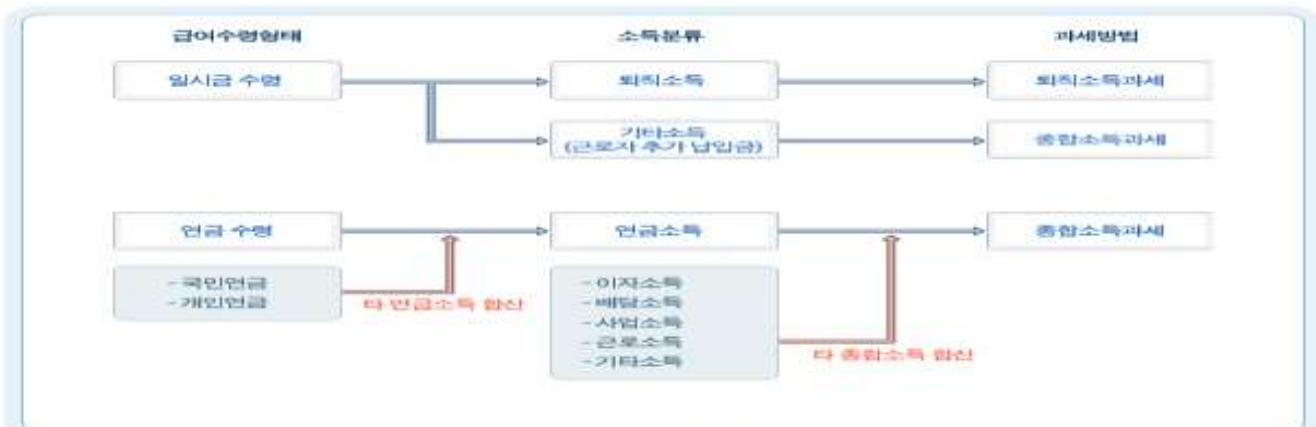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

2)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금수령시 연금수령 방법 등에 따라 과세

3) 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 연금 수령, 연금외 수령 등 연금의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름.



*자료출처 :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

※ 자세한 사항은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준가는 일반기준가와 과표기준가가 있으며, 이들 가격은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meritzam.com) · 판매회사 ·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일반기준가란, 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되어 있는 주식과 채권 등의 모든 자산을 그날의 시가 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채권의 이자와 주식의 배당금 등의 수입을 추가하여 자산총액을 산출합니다. 여기에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등을 차감하여 순자산총액을 산출하고, 그 날의 수익증권(또는 주권)의 총좌수로 나누어 기준가격이 산출됩니다.

과표기준가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수익중 채권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등은 과세대상 수익이므로 이를 기초로 과표산정을 위해 산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즉 거래는 기준가격으로 하고 과세는 과표기준가격으로 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8 기(2021.08.21 - 2022.08.20)	삼덕회계법인	적정
제 7기(2020.08.21 - 2021.08.20)	삼덕회계법인	적정
제 6기(2019.08.21 - 2020.08.20)	다산회계법인	적정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항 목	제 8 기	제 7기	제 6기
	(2022.08.20)	(2021.08.20)	(2020.08.20)
운용자산	47,368,256,210	61,100,276,985	36,921,921,778
증권	46,793,037,954	60,729,858,913	36,840,903,248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575,218,256	370,418,072	81,018,530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51,981,251	218,404,603	906,773,804
자산총계	47,420,237,461	61,318,681,588	37,828,695,582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184,520,812	394,285,395	1,009,609,469
부채총계	184,520,812	394,285,395	1,009,609,469
원본	56,678,583,458	46,902,760,398	40,305,681,250
수익조정금	608,194,930	2,651,511,467	-274,091,055
이익잉여금	-10,051,061,739	11,370,124,328	-3,212,504,082
자본총계	47,235,716,649	60,924,396,193	36,819,086,113

[단위 : 원, %]

항 목	제 8 기	제 7기	제 6기
	(2021.08.21 - 2022.08.20)	(2020.08.21 - 2021.08.20)	(2019.08.21 - 2020.08.20)
운용수익	-8,966,492,548	15,889,454,076	8,062,785,433
이자수익	6,164,179	587,938	586,834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8,972,656,727	15,888,866,138	8,062,198,599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607,799,785	606,967,109	437,459,133
관련회사 보수	607,799,785	606,967,109	437,459,133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10,339,177	9,049,493	6,487,867
당기순이익	-9,584,631,510	15,273,437,474	7,618,838,433
매매회전율	0.00	0.00	0.00

주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2)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재무상태표

[단위:원]

과 목	제8기(2022.08.20)		제7기(2021.08.20)		제6기(2020.08.20)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운용자산						
현금및예치금						
1. 현금및현금성자산	575,218,256	575,218,256	370,418,072	370,418,072	81,018,530	81,018,530
2. 예치금						
3. 증거금						
대출채권						
1. 콜론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여음						
4. 대출금						
유가증권						
1. 지분증권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46,793,037,954	46,793,037,954	60,729,858,913	60,729,858,913	36,840,903,248	36,840,903,248
4. 기타유가증권						
파생상품						
1. 파생상품						
부동산과 실물자산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1. 임차권						
2. 전세권						
기타자산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51,981,251		218,404,603		906,773,804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576,969		43,401		8,494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입금	51,404,282		218,361,202		906,765,310	
6. 기타자산						
7. 수익증권청약금						
자 산 총 계		47,420,237,461		61,318,681,588		37,828,695,582
부 채						
운용부채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기타부채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184,520,812		394,285,395		1,009,609,469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51,348,992		218,095,910		905,641,691	
4. 수수료미지급금	133,171,820		176,189,485		103,967,778	
5. 기타미지급금						
6. 기타부채						
부 채 총 계		184,520,812		394,285,395		1,009,609,469

과 목	제8기(2022.08.20)		제7기(2021.08.20)		제6기(2020.08.20)	
	금	액	금	액	금	액
자 본						
1. 원 본	56,678,583,458		46,902,760,398		40,305,681,250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486,595,137	
3. 이월잉여금						
(발행차수 당기: 56,678,583,458 좌 전기: 46,902,760,398 좌 전전기: 40,305,681,250 좌)	-9,442,866,809	이익잉여금 수익조정금	-10,051,061,739 608,194,930			
(기준가격 당기: 843.02 원 전기: 1,000.00 원 전전기: 939.20 원)						
자 본 총 계	47,235,716,649			11,370,124,328 2,651,511,467		
부 채 와 자 본 총 계	47,420,237,461			60,924,396,193		
				61,318,681,588		
					36,819,086,113	
					37,828,695,582	

다. 손익계산서

[단위:원]

과 목	제8기(2021.08.21-2022.08.20)		제7기(2020.08.21-2021.08.20)		제6기(2019.08.21-2020.08.20)	
	금	액	금	액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1. 이자수익	6,164,179		587,938		586,834	
2. 배당금수익						
3. 수수료수익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1. 지분증권매매차익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5. 외환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7. 기타거래차익	1,150,668,354		15,888,876,877		8,228,325,825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1. 지분증권매매차손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5. 외환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100		840		299	
8. 기타거래손실	10,123,324,981		9,899		166,126,927	
운 용 비 용						
1. 운용수수료	272,569,700		618,138,962		616,016,602	
2. 판매수수료	324,327,353		265,267,107		179,107,847	
3. 수탁수수료	10,902,732		331,089,362		251,187,050	
4. 투자자문수수료			10,610,640		7,164,236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10,339,177		9,049,493		6,487,867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9,584,631,510		15,273,437,474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169104994		0.325640481	
						0.189026415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메리츠코리아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주식]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1.08.21 - 2022.08.20	459	459	425	419	322	315	562	474

2020.08.21 - 2021.08.20	393	369	286	351	220	268	459	611
2019.08.21 - 2020.08.20	431	325	182	150	220	187	393	369

주 1) 2020.08.21 - 2021.08.20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4,021,653,935 좌/14,021,653,400 원

주 2) 2019.08.21 - 2020.08.20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599,044,082 좌/562,623,647 원

메리츠코리아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주식]종류 C(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1.08.21 - 2022.08.20	288	288	107	105	64	60	331	275
2020.08.21 - 2021.08.20	339	298	68	77	119	134	288	355
2019.08.21 - 2020.08.20	418	300	80	62	159	128	339	298

주 1) 2020.08.21 - 2021.08.20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6,685,061,776 좌/6,684,590,843 원

메리츠코리아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주식]종류 C-Pe2(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1.08.21 - 2022.08.20	181	181	166	162	112	108	236	197
2020.08.21 - 2021.08.20	64	64	210	274	93	123	181	255
2019.08.21 - 2020.08.20	28	25	92	89	55	54	64	70

주1) 2020.08.21 - 2021.08.20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7,337,428,704좌/7,337,062,557원

주2) 2019.08.21 - 2020.08.20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562,623,647좌/562,623,647원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기준)

[단위:%]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1.09.27 ~22.09.26	20.09.27 ~22.09.26	19.09.27 ~22.09.26	17.09.27 ~22.09.26	14.08.21 ~22.09.26
메리츠코리아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주식]	-26.23	3.22	8.40	4.42	2.87
비교지수	-28.94	-1.28	2.30	-1.33	0.86
수익률변동성(%)	13.88	15.41	20.58	18.47	17.93
종류 C(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27.20	1.90	7.04	3.09	1.69

비교지수	-28.94	-1.28	2.30	-1.33	0.86
수익률변동성(%)	13.88	15.41	20.58	18.47	17.93
종류 C-Pe2(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26.92	2.28	7.43	3.47	3.30
비교지수	-28.94	-1.28	2.30	-1.33	-1.46
수익률변동성(%)	13.88	15.41	20.58	18.47	18.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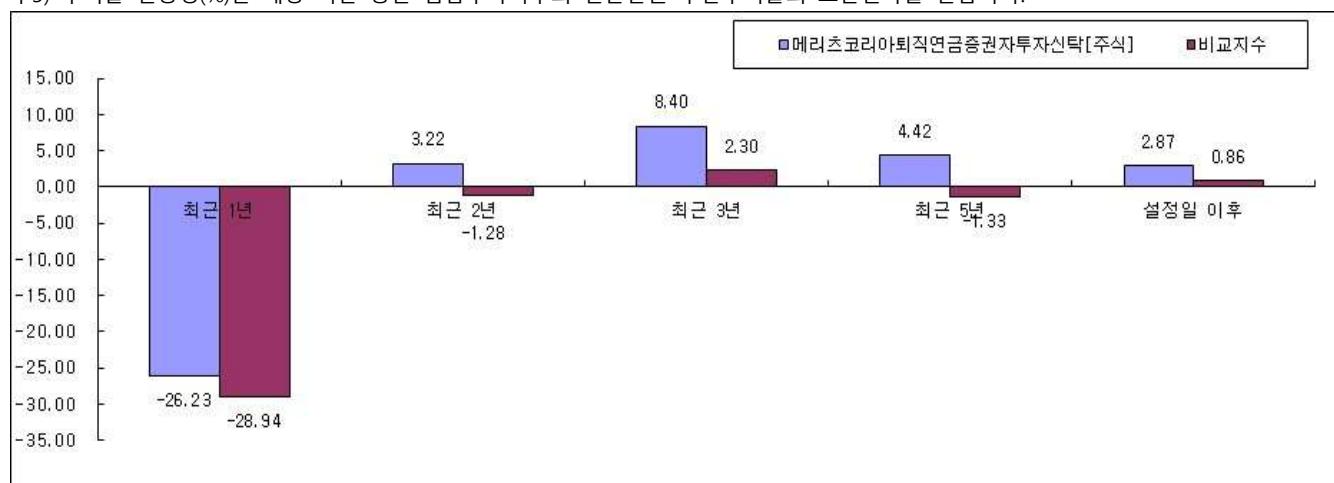
주1) 비교지수 : KOSPI X 10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레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5)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를 말합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기준)

[단위:%]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1.09.27 ~ 22.09.26	20.09.27 ~ 21.09.26	19.09.27 ~ 20.09.26	18.09.27 ~ 19.09.26	17.09.27 ~ 18.09.26
메리츠코리아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주식]	-26.23	44.43	19.59	-9.99	8.24
비교지수	-28.94	37.14	9.85	-11.31	-1.48
종류C(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27.20	42.64	18.12	-11.17	6.86
비교지수	-28.94	37.14	9.85	-11.31	-1.48
종류C-Pe2(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26.92	43.15	18.54	-10.82	7.26
비교지수	-28.94	37.14	9.85	-11.31	-1.48

주1) 비교지수 : KOSPI X 10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마지막 수익률은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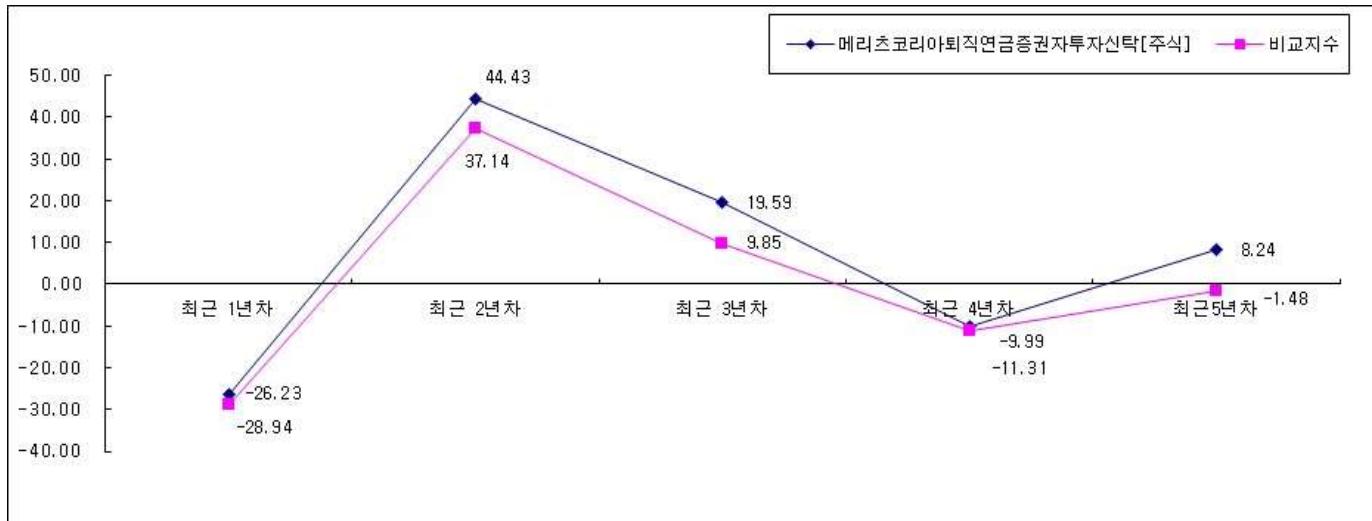
주4) 마지막 수익률은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5) 마지막 수익률은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7)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레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

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2022.08.20 현재 / 단위 :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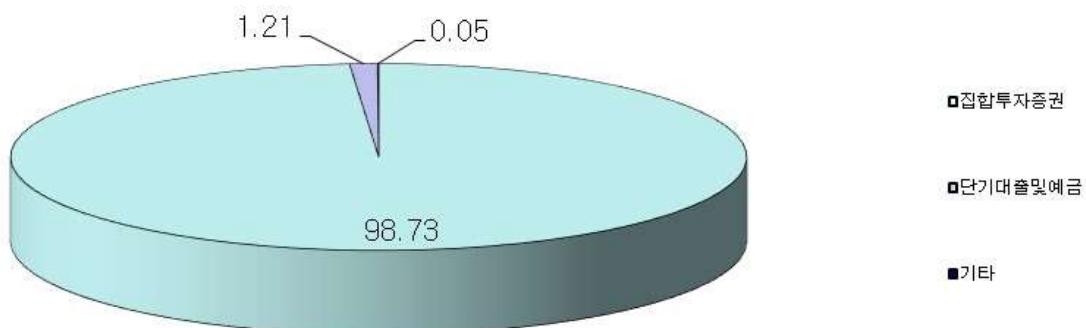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0	0	468	0	0	0	0	0	6	0.3	474
	(0.00)	(0.00)	(0.00)	(98.73)	(0.00)	(0.00)	(0.00)	(0.00)	(0.00)	(1.21)	(0.05)	(100.00)
합계	0	0	0	468	0	0	0	0	0	6	0.3	474
	(0.00)	(0.00)	(0.00)	(98.73)	(0.00)	(0.00)	(0.00)	(0.00)	(0.00)	(1.21)	(0.05)	(100.00)

주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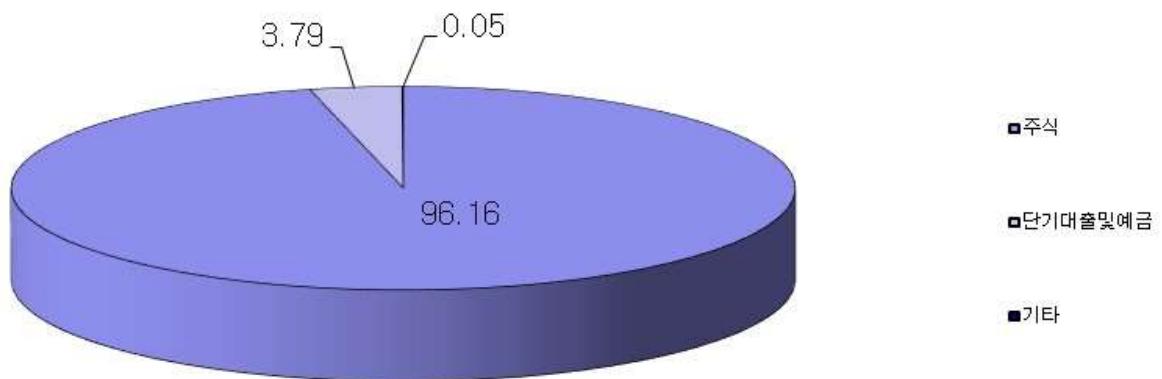
※ 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메리츠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22.08.20 현재 / 단위 :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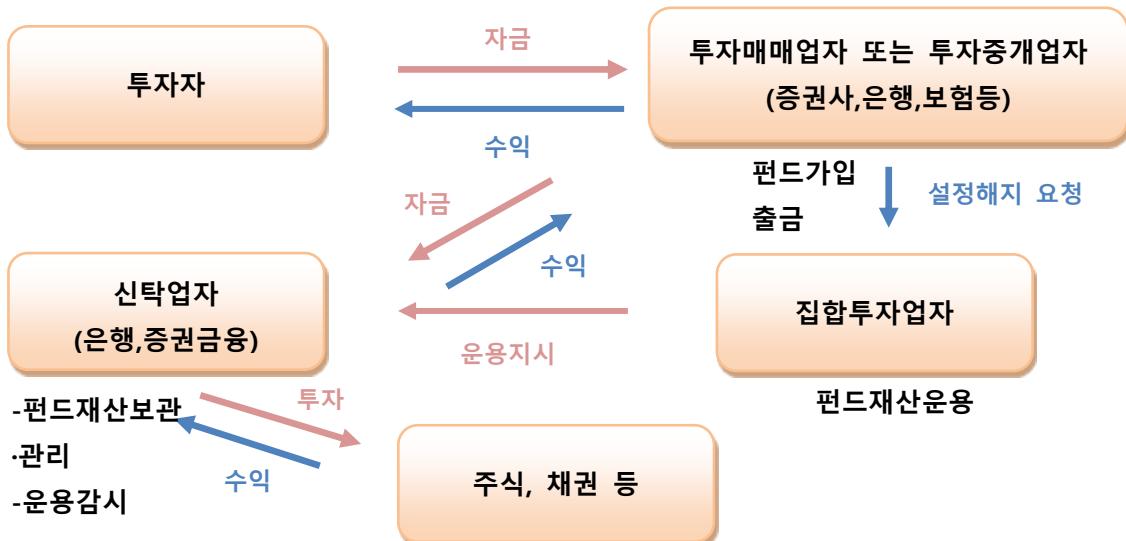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1,186	0	0	0	0	0	0	0	47	1	1,233
	(96.1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3.79)	(0.05)	(100.00)
합계	1,186	0	0	0	0	0	0	0	47	1	1,233
	(96.1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3.79)	(0.05)	(100.00)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와 투자자 및 집합투자기구간의 관계



1. 집합투자업자의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메리츠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04(계동, 계동빌딩) TEL)02-6320-3000 http://www.meritzam.com/
회사연혁	2008. 5. 6 회사설립 2008. 7.11 자산운용업 본허가 2008. 7.28 메리츠종금 영업양수 2009. 2.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인가 2010. 3.11 자본금 50억원 증자 2013.12.16 자본금 감소 무상감자(결손금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2015.10.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자본금	132.3억원
주요주주현황	메리츠금융지주 100%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 해지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 운용지시
- 투자회사재산의 운용업무

(2) 선관의무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3) 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요약 재무상태표>			<요약 손익계산서>		(단위:백만원)
구 분	제 14기말 2021.12.31	제 12기말 2019.12.31	구 分	제14기 2021.01.01~ 2021.12.31	제13기 2020.01.01~ 2020.12.31
자산총계	78,342	45,032	영업수익	20,276	17,067
- 현금및예치금	48,873	21,553	- 자산관리수수료	1,618	1,541
- 유가증권	22,877	13,809	- 집합투자기구운용보수	12,906	8,946
- 이연법인세자산	2,048	3,724	- 집합투자증권 취급수수료	1,123	314
- 기타자산	4,544	5,946	- 유가증권매매익	4,413	6,125
• 미수수익	2,217	1,621	- 이자수익 등	216	141
• 무형자산	389	393	영업비용	15,046	13,320
• 기타	1,938	3,932	- 임직원급여	8,155	6,906
부채총계	42,251	15,958	- 복리후생비	795	853
• 예수부채등	42,251	15,958	- 건물임차료	55	39
자본총계	36,091	29,073	- 전산운용비	1,029	881
- 자본금	13,230	13,230	- 기타제비용	5,012	4,641
- 자본조정	-74	-74	영업이익	5,230	3,746
- 기타포괄손익	-344	-337	영업외손익	8	121
- 이익 잉여금	23,279	16,254	세전이익	5,238	3,867
			법인세비용	997	1,006
당기순이익	4,241	2,212	당기순이익	4,241	2,861
			당기총포괄이익	4,202	2,815

* 상기 요약 재무제표는 K-IFRS기준으로 작성함

라. 운용자산규모

[2022.09.26 현재 / 단위: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 및 부동산파생	특별자산 및 특별자산파생	혼합자산 및 혼합자산파생	단기 금융	총 계
	주식형	채권 형	혼합 형	계약형	재간접 형	파생형	기 타					
수탁고	8,255	1,048	2,075	0	4,647	3,451	0	133	9,357	1,007	0	29,972

2. 운용관련 업무 신탁업자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신탁업자 : 해당사항없음

나. 기타 업무의 신탁업자 : 해당사항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

(1) 회사개요

회 사 명	(주)하나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을지로 35(을지로 1 가, 하나은행) ☎ 1588-1111 www.kebhana.com
회사연혁	1991.7. 설립 1999.1. 통합 '하나은행' 출범 (충청은행/보람은행 합병) 2000.2. Allianz AG 전략적 제휴 체결 2002.12. 서울은행과 합병. 통합 '하나은행' 출범 2015.09.01 (주)하나은행과 (주)한국외환은행 합병(KEB하나은행)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2) 주요업무

- 1)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2)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3)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4)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5)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 배당 · 수익금 · 임대료 등의 수령
- 6)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7)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8)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9)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의무와 책임

1) 의무

- ①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③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④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사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2)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사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집합투사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신한아이타스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70 신한금융투자타워16 ☎ 02) 2168 – 0400 http://www.shinhanaitas.com
회사연혁	2000. 6 법인설립 2008. 5 신한은행 자회사로 편입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2) 주요 업무

① 주요업무

- 기준가격의 산정업무
- 기준가격의 통보업무

② 의무와 책임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사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사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합니다.

-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사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	NICE피앤아이	KIS채권평가	에프앤자산평가
주소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88(운니동 98-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여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

연락처	T.02-399-3350	도동) T.02-398-3900	의도동) T.02-3215-1400	T.02-721-530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www.koreaap.com	www.nicepni.com	www.bond.co.kr	www.fnpricing.com

(2)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수익증권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1)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2)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1) 수익자총회의 소집

- ①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②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③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④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의결권 행사방법

- ①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②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 (ㄱ) 수익자에게 법시행령 제221조제6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ㄴ)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ㄷ)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 (ㄹ)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③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⑤ 모자형투자신탁인 경우 자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자투자신탁의 수

의자총회에서 의결된 찬반비율에 비례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3) 연기수익자총회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②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 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5)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투자신탁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②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③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 합병·분할·분할합병

나.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④ 환매금지형투자신탁(존속기간을 정한 투자신탁으로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⑤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⑥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시행령 제222

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1)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증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2)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수익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2)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1)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써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의 주체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증개업자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증개업자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1)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시행일 2015.1.1])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3)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상기의 (3) 내지 (4)의 사유로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1) 영업보고서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이내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라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
· 수수료와 그 비중

2)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산운용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②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③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1)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자투자신탁의 자산운용보고서에 모두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2)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합니다.

①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②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③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④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인 매매회전율

3)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에 해당하는 투자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자투자신탁의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②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증개업자,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③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증개업자,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④ 자투자신탁의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자투자신탁의 자산운용보고서에 모두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1)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② 신탁업자의 변경 (합병 · 분할 ·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및 법시행령 제 245 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 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 되는 경우 제외)
-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
- ④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투자신탁의 종류
 - 투자신탁의 명칭
 - 투자대상자산(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따로 기재하여야 함)
 -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 수익증권의 추가발행과 소각에 관한 사항
 - 신탁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와 기준가격의 계산에 관한 사항
 - 이익 외의 자산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신탁계약의 변경과 해지에 관한 사항
 -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 투자자산별 취득한도 및 취득한도 초과시 해소방법 및 해소기한
- ⑤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등 아래의 수시공시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www.meritzam.co.kr), 자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 자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는 방법
 - 집합투자업자, 자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집합투자업자(www.meritzam.com) 및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④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⑤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 89조 및 시행령 제93조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른 변경,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 변경,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도

-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그 밖에 투자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1)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①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②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2)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①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분	내용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투자중개업자 선정 시 각 자산에 대한 평가항목은 조사분석서비스와 매매체결서비스로 분류하며, 운용담당부서에서 항목별 배점기준을 두어 평가한다.	
	구 분	조사분석서비스
	배점기준	70%
평가방법	<p>① 당사의 「조사분석서비스 이용에 관한 지침」에 의한 조사분석서비스평가위원회에서 투자중개업자를 평가·선정한다. 이 경우 각 운용담당부서에서 「조사분석서비스 이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해당 임직원 중에서 평가위원을 정한다.</p> <p>② 조사분석서비스평가위원회의 평가, 선정은 분기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평가주기를 단축할 수 있다.</p>	

③ 당사는 거래 투자중개업자를 적절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주1) 2014.1.2에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없음.

참고 - 펀드용어정리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 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모자형(집합투자기구)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배당소득	펀드운용시 증권(주식·채권 등)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또는 총보수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판매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판매 및 관리 등 집합투자증권 매입, 환매 및 투자기간 중 지속적으로 제공된 서비스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므로, 간접적으로 고객의 지불하는 비용으로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신탁보수, 성과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익자총회 (집합투자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며,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이득	펀드운용시 증권(주식·채권 등)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차익을 말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재산의 50% 초과하여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